

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 경과

- 제 출 : 2007. 8. 30.(시장제출)
- 회 부 : 2007. 8. 30.(총무위원회, 의안번호 제62호)
- 상 정 : 2007. 9. 17.(제116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총무과장 엄정기)

가. 제안이유

우리시 도서지역 주민에게 의료 수혜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수보건진료소를 신설 운영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신수보건진료소 신설에 따른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비함

다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-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최진기)

- 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신수도 지역주민들과 이삼수 의원님의 건의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후 신수보건진료소 설치를 확정하고, 건물 신축 등 1억 7000여 만원을 투입, 지난 7월 31일자로 완공한 후 9월 11일자로 신수보건진료소 개소식을 함으로서 신수도 지역주민들에게 의료 수혜를 제공하고 있음.
- 보건진료소의 설치 기준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, 도서지역의 경우 주민수가 300인 이상일 경우 설치 가능하고 관련법상 위배됨이 없음으로보건진료소의

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위원	질의 내용	답변자	답 변 요 지
탁석주 위원	○ 신수보건진료소의 직원 수는? ○ 진료소 직원이 응급조치 등 이 가능한지?	총무과장 엄정기	○ 계약직 마감 1명임. ○ 응급조치는 가능함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